

지역고용

☐ 계 획
☐ 계획변경

신고서

접수번호

접수일자

처리기간 : 1일

사업장	①사업장관리번호								
	②명 칭				③대규모기업	[] 해당 [] 비해당			
	④소재지	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 담당자:)							
	⑤업종명	(주생산물:)							
	⑥업종코드					⑦피보험자수	명		

사업 장 이전 · 신설 · 증설 계획	⑧ 이 전 계 획	이전 예정일	변경 전 소재지			변경 후 소재지				
		년 월 일								
	⑨ 신 설 계 획	사업장명								
		소재지								
		업종명				업종코드				
		시설·장비 설치현황				예상소요비용:	만원			
	⑩ 증 설 계 획	시설·장비 증설현황				예상소요비용:			만원	
	지역근로자 고용계획	⑪조업시작 예정일	년 월 일			⑫고용예정 인원	명			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(사업주)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공지사항

1.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2. 지역고용계획은 지정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3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작성방법

1.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.
2. ⑤업종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(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른 고시)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(세세분류)에 의합니다.